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3.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분야

NO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1	공동사업 지원	공동기술개발, 공동마케팅, 공동구·판매 지원	25,200천원
2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	2,895천원
3	협동조합간 협업지원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	95,90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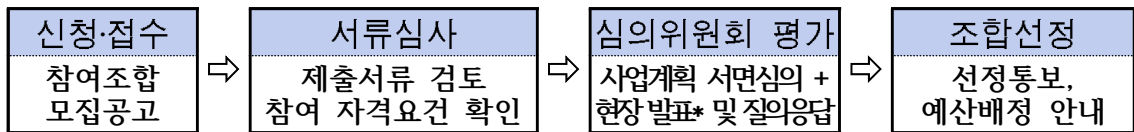
- 동 사업에 관한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에 따른 잔여 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공동사업 지원 / 2.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 '25.11.3(월) ~ 11.7(금) 18시까지
 - (3.협동조합간 협업지원) :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seoul@kbiz.or.kr) 제출
 -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 문 의 : 박미화 부부장(☎ 02-2124-4383)

□ 선정방법

- 선정대상 : 1.공동사업 지원 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 선정절차 :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평가 후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예산 규모 배정
 - 단순·반복적인 사업보다 지원효과와 필요성이 큰 신규사업 우대



- 지원한도 : 협동조합 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공동사업+혁신역량)
 - 단, 혁신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가능
 - * 조합당 지원한도는 기존 공고(제2025-01호)에 따라 선정되어 배정·집행된 예산을 포함함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시 ①서면심의 + ②사업계획 현장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 총 사업비 신청액(=공동사업+혁신역량)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사업계획 발표(PT) 및 질의응답 수행 (단, 2년이상 동일사업으로 수행실적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사전 제출, 발표자는 협동조합 임직원(이사장 포함)에 한함

○ 평가 항목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정량평가	○사업운영 잠재역량 등 - 총회보고, 조합포털입력, 임원운영, 직원수, 조합원수 등	50
정성평가	○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창의성)	20
	○사업계획(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
	○기대효과 및 협동조합 활성화 기여도	10
가 점	○공동사업자금 출연, 사랑나눔재단 기부	5
	○이사회·총회 사업계획 반영 여부	5

○ 선정 제외

- 사업성격이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 조합원 전체 공지를 하지 않고 이사장 및 소수 조합원만 참가하는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이후 지역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협동조합
- 보조금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협동조합
- 휴면 중이거나 이사장이 공석인 협동조합
- 조합 부실운영, 법정 보고의무 사항 미준수한 협동조합

※ 지원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세부 사업내용

I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개요 :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또는 업계 공통사항으로 전체 활력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 모집대상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총사업비 : 25,200천원
- 지원내용 : 7(지원금) : 3(협동조합 자체자금) 매칭 지원
 - 공동기술개발, 공동브랜딩,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지원
 - 업종·품목별 공통 현안사항으로 업계 전체적인 활력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연구용역 등)
- 지원한도 : 공동사업 +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 조합 당 최대 5천만원
 - * 혁신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①신청서(붙임1)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사업계획 발표자료(PPT)* ④이사회, 총회 시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⑤예산견적 증빙서류
 - * 총 사업비 신청액(=공동사업+혁신역량)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결과) ①결과보고 공문(붙임5) ②결과보고서(붙임6) ③지출결의서 ④비교견적서 ⑤세금계산서 ⑥이체확인증 ⑦조합 통장사본 ⑧조합 사업자등록증 ⑨참여 조합원 명단
 - * 자체자금 집행 증빙 必(세금계산서는 조합으로 발행, 간이영수증 불인정)
- 주의사항
 - 이사장 및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취소
 - 허위 청구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3년간 지원 제외

II

중소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 개요 : 협동조합 운영 성공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합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별강의 및 중소기업 현안시책 논의 등
- 모집대상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총사업비 : 2,895천원
- 지원내용 : 7(지원금) : 3(협동조합 자체자금) 매칭 지원
 - 업계 현안과제 공유·논의, 업종·품목별 필수 직무능력 교육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강, 인문학협동조합 운영·부정청탁금지법 등 전문 강의
 - 협동조합 운영 성공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사업프로그램에 '강의(교육)' 및 '조합원 토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
- 지원한도 : 공동사업 +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 조합 당 최대 5천만원
 - * 혁신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①신청서(붙임3) ②사업계획서(붙임4) ③사업계획 발표자료(PPT)*
④이사회, 총회 시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⑤예산견적 증빙서류
 - * 총 사업비 신청액(=공동사업+혁신역량)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결과) ①결과보고 공문(붙임5) ②결과보고서(붙임6)*③지출결의서
④비교견적서 ⑤세금계산서 ⑥이체확인증 ⑦조합 통장사본
⑧조합 사업자등록증 ⑨참여 조합원 명단
 - * 결과보고서, '사진(강의장면, 토론장면)', '강의자료', '토의자료' 반드시 제출
 - ** 자체자금 집행증빙 必 (세금계산서는 조합으로 발행, 간이영수증 등 불인정)
- 주의사항
 - 이사장 및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취소
 - 허위 청구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3년간 지원 제외

Ⅲ 中企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

- 개요 : 서울지역 협동조합 간 또는 서울지역 협동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연합회 등) 간 협약체결 또는 계약을 통한 거래
- 모집대상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총사업비 : 95,908천원
 - * 조합별 고유목적사업과 연관된 신규 협업사업 우대
- 지원내용 : 협동조합 간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 * 소급가산(25. 1. 1일 이후)
 - 참여 조합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지원금의 80%만 지급
 - 서울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이 신청·지원대상
 - 서울과 타 조합(연합회) 간 거래 : 구·판매 서울지역 협동조합이 신청·지원대상
 - * 타 지역 거래 시 판매(공급)자라도 서울지역 협동조합이 신청 및 지원대상이 됨
 - * 지원금의 50% 내에서 조합 수수료 가능(조합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규정 필요)
- 지원한도 : 조합 당 5천만 원
 - 거래대상 조합 당 지원한도 2천 5백만원 적용
 - 동종업종 조합(연합회)간 거래는 지원한도의 50% 적용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 지원 결정된 사업이라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 ① 신청공문(붙임7), ② 신청서(붙임8), ③ 총회(이사회) 의결 의사록 사본(거래조합, 거래품목 및 규모,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기재), ④ 협동조합 간 거래내용이 기재된 MOU 체결 서류 사본
 - (결과) ① 결과보고 공문(붙임9), ② 결과보고서(붙임10) ③ 조합 간 계약서(품목, 단가, 기간, 규모 등), 견적서, 비교견적서

- ④ 조합 간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
- ⑤ 전체 조합원 대상 참여 조합원 모집 공고문 및 안내 증빙
(홈페이지 게재, 공문, 팩스, 문자 발송 리스트 등)
- ⑥ 참여 조합원 명단 (붙임11)
- ⑦ 거래품목 사진(또는 샘플) *사진별로 거래내용에 관한 설명 기재
- ⑧ 조합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 자체자금 집행증빙 必 (세금계산서는 조합으로 발행, 간이영수증 등 불인정)

○ 주의사항

- 반드시 조합 간의 거래만 인정(타 조합 조합원과의 직접 거래는 불인정)
- 이사장 및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이 참여 조합원에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허위 청구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3년간 지원 제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요약)

구 분	1. 공동사업	2 혁신역량 교육	3. 협동조합 협업	4. 일자리 지원 (별도 공고,제2025-05호)
접수기간	2025. 11. 3(월) ~ 11. 7(금) 18시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2025.11.3(월) ~11.7(금)18시
지원내용	공동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 비용 지원	직무교육, 포럼, 세미나 비용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 (참여조합원수 5인 이내시 지원금의 80% 지급)	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
한 도 (조합당)	공동사업 + 혁신역량 = 최대 5천만원 * 혁신성 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시 5천만원 초과 가능		최대 5천만원 * 거래 조합 당 최대 2천 5백만원 한도	월 최대 133만원
총사업비 (천원)	25,200	2,895	95,908	30,127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2)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이사회, 총회 시 회의록 및 사업 계획 예산건적 증빙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4)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이사회, 총회 시 회의록 및 사업 계획 예산건적 증빙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공문 신청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 거래조합, 거래품목 및 규모, 내용, 일정 등 MOU 체결 서류 	<채용 前>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고용계획서 개인정보청렴이행 약약 동의서 약정서 <채용 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통보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구인공고 등 근로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방지 약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면접 점수표
결과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 공문 결과보고서 (샘플 사진 등)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참여 조합원 명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 공문 결과보고서 (사진 자료 등)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참여 조합원 명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 공문 결과보고서 조합간 계약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 영수증 거래명세서 전체 조합원 대상 모집 공고 증빙 참여 조합원 명단 거래 사진샘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태기록물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통장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페이지 수 제한 없음(심의위원회 자료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

1. 사업목적 ※ 사업추진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시급성, 지원필요성, 목표 등)
2.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개요(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 추진방법 및 절차(사업추진 흐름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표나 그림 표현)
3. 참여 대상 및 인원
4.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2025. x. xx() ~ xx()
 - 사업 기획 : 2025. x. xx()
 - 업체 모집 :
 - 사업 수행 :
 - 결과 보고 :
5. 기대효과
6. 소요비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집행내역	금 액	비 고
총 소요비용				
경비 지원	자체비용 (30%)	○ ○ ○		
	보조금 (70%)	○ ○ ○		

○○○ 사업 계획서

※ 사업신청서 페이지 수 제한 없음(심의위원회 심의자료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

1. 사업목적 ※ 사업추진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시급성, 지원필요성, 목표 등)

2.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개요(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 추진방법 및 절차(사업추진 흐름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표나 그림 표현)

3. 참여 대상 및 인원

4.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2025. x. xx() ~ xx()

○ 사업 기획 : 2025. x. xx()

○ 업체 모집 :

○ 사업 수행 :

○ 결과 보고 :

5. 기대효과

6. 소요비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집행내용	금 액	비 고
총 소요비용				
경비 지원	자체비용 (30%)	○ ○ ○		
	보조금 (70%)	○ ○ ○		

(조합명)공동사업·혁신역량교육 결과보고서

1. 사업목적 :
2. 사업기간 (일시/장소) :
3. 참석인원(참여 조합원수) :
4. 추진내용 (행사 일정) : 구체적으로 작성
5. 기대효과(또는 사업성과) :
6. 소요비용 : 총 〇〇〇〇원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집행내역 및 금액	합 계
자체자금(30%)	○책자 편집비 : 300,000원	300,000원
지원금(70%)	○인쇄비 : 700,000원	700,000원
합 계		47,500,000원

7. 참석자 서명

No	소 속	직 위	성 명	핸드폰번호	서명날인
1					
2					
3					
4					

※ 사진 (①강의장면, ②토론장면), ③강의자료, ④토론자료 반드시 제출

붙임8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	------------------------------

조합정보				
조합명	이사장		성명	
			H.P	
주소				
전화번호	팩스			
설립연도	조합원수			
'24년 수입금	(단위 : 원)		'25년 총회 개최일	
담당자	직위	성명	H.P	e-mail

신청정보		
신청사업	사업명	
	거래대상 협동조합	
	사업목적	
	거래품목	
	거래규모	(수량) / (금액) 원
	거래기간	
	참여 조합원 수	* 사업 참여대상 및 예정인원 기재

사업계획

* 아래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상세 기재 요망(별지사용 가능), 관련 사진 제출 요망

1. 사업내용

○ 필요성(현황 및 문제점)

-

-

○ 실행방안(사업내용 및 용도)

-

-

○ 거래규모(거래 수량, 금액 등)

-

○ 거래일정(월별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

-

-

2. 기대효과

○

○

3. 거래예상액(단위 : 원)

구 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거래규모				
지원요청규모 (거래비용의 10%)				

(조합명)
협업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사업목적] * 목적 및 사업추진 경위, 경제적 이익, 기대효과 등

1. 협업대상 조합 :
2. 거래기간 :
3. 거래품목 및 단가 :
4. 거래규모
 - 품목별 거래수량 :
 - 거래금액(원, VAT포함) :
5. 참여 조합원 : 명
6. 지원금 요청액(거래금액의 10%) :

※ 전체 조합원 대상 참여 조합원 모집 공고문 및 안내증빙 반드시 제출
(홈페이지 게재, 공문, 팩스문자 발송 리스트 등)

붙임11**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원 명단 양식**

No	소 속	직 위	성 명	핸드폰번호	서명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